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4월 17일

나. 발 의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4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가. 제안이유

-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의 일환으로 본인부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최소화 및 산재사고 발생 후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사업 예산범위 명확화(안 제7조제1항)
-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배달 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대부분의 배달 노동자들은 한 업체에만 속한 경우가 드물다 보니 그동안 산재보험의 적용 사각지대에 있었음.
- 그러나 2023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배달노동자”도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법 개정과 발맞춰 우리 구(區) 배달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료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7조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타 지자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첫 시작으로 서울시 마포구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구는 서울시 내 2번째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검토 결과

- 전통적 고용 형태를 벗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의 비전속성과 업무의 초단기성으로 인해 노동 관계 법률을 대부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배달업의 급속한 팽창으로 관련 노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노동환경 특성상 교통사고에 빈번히 노출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에서도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법적 타당성이 있음.
- 현재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로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플랫폼 업체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1,700~1,900여명으로, 1인당 연 최대 1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으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할 계획임. 우리 구(區)의 지원 대상 규모는 1,700~1,900명이지만 신청이 선행되어야 지급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지급 대상은 950여명으로 산출하여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및 홍보비로 총 99,000천원을 추산함
- 지원 수준의 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연 14만원, 서울시 마포구에서는 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여겨짐.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17 호
----------	---------

제출연월일: 2025. 4.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업무특성 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지원 일환으로 본인부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최소화 및 산재사고 발생 후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플랫폼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 1) 지원사업 예산범위 명확화(안 제7조제1항)
- 2)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2025년 추경 예산 반영 예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별도 의견 없음
- 3)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 4)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25. 3. 27. ~ 4. 16./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의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생략)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 ----- -- <u>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u> -- -----. 1. ~ 4. (현행과 같음) 5. <u>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의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내역

-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연 10만원 X 950명): 95,000천원
-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홍보비: 4,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소요예산: 99,000천원(1억원 미만)
※ 연 1인당 10만원 이내, 총 950명 지원 및 홍보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박혜성
연 락 처	02-2670-3441